

코인원 거래지원 심사 기준

코인원은 더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」 기반으로 거래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

코인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서 거래지원 심사를 진행합니다.

1. 발행주체의 신뢰성

-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, 유통량 계획,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
-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(단,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) 등

2. 이용자 보호 장치

-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(백서 등)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
-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(블록 익스플로러 등)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

3. 기술·보안

- 가상자산,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·전송·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발행·소각, 실행 권한자 변경, 계정 비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

4. 법규 준수

- 「이용자보호법」 제10조제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」 제28조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
- 「이용자보호법」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가상자산이 자금세탁, 테러자금 조달, 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
5. 기타 이용자 피해 우려 등

- 가상자산의 질적 평가 결과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
- 본 심사기준은 코인원 거래소 회원이 거래지원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.
- 본 심사기준은 코인원의 상황에 따라 수정/보완/삭제/변경될 수 있으며,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- 코인원은 본 심사기준에 포 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, 본 심사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